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남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최현철

전화 02-3219-4420 / 팩스 02-3219-2397

보도자료
2024. 7. 16.(화)

제 목

가공인물을 만들어 책임을 돌리고 수사기관 등을 농락하려 한 주가조작 사범 엄단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서울남부지검 금융·증권범죄 합동수사부(부장 공준혁)는 **가공인물에게 주가조작 책임을 전가하고, 주변 관계인에게도 같은 취지의 허위진술을 종용한 주가조작 사범을 어제(7. 15.) 구속기소**하고, 이에 관여한 6명을 자본시장법위반 및 위증 등으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하는 등 **총 7명을 기소**하였습니다.
- 주가조작 일당은 2018. 초경 코스닥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관련 업종의 주가가 호황을 이루자, ‘**핫한**’ 바이오 신약 사업을 주가 부양 소재로 삼는 등 **합계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범행을 설계·실행**하였습니다.
- 주가조작 사범이 **가공인물을 주범으로 내세우는 등 조직적인 수사 방해로** 수사가 난항을 겪었으나, 2년간의 끈질긴 수사로 **다수의 증거를 확보하여 주가조작 범행을 밝혀냈고, 추가로 100억원 상당 기업 횡령 비리까지 찾아내는 등 사안의 전모를 규명**하였습니다.
- 또한 이 사건 주범이 **관련 형사재판에서 동일 가공인물이 주범인 양 책임을 미루고 관련자들에게 조직적으로 위증을 교사**하고, 위증한 사실까지 확인하여 엄단하였습니다.
- 향후에도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**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금융·증권 범죄에 대해 몇 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**하여, **‘단 한 번의 주가조작만으로도 패가망신한다’**는 원칙이 자본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
1

피고인

피고인	지위	처분	피고인	지위	처분
A (51세)	甲 실소유주	구속 기소	E (64세)	甲 고문	불구속 기소
B (41세)	乙 대표	불구속 기소	F (62세)	甲 고문	불구속 기소
C (47세)	A의 지인	불구속 기소	G (38세)	A의 운전기사	불구속 기소
D (47세)	丙 대표	불구속 기소	총 7명		

※ 甲(모래 세척·판매 및 석유화학 완제품 수출 사업)은 2021. 4. 2. 상장 폐지, 乙은 경영컨설팅 업체, 丙은 A가 실사주인 법인으로 甲 시세조종 및 횡령에도 이용

2

공소사실 요지

피고인	범죄사실 요지
A B	[자본시장법위반(사기적부정거래)] 2018. 3.~7.경 바이오 사업 추진 관련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(부당이득액 : A 169억원, B 25억원)
A C	[자본시장법위반(시세조종)] 2018. 7.~12.경 차명계좌를 이용한 甲 주식에 대한 가장매매, 고가매수주문 등(부당이득액 160억원)
A C D E F G	[위증교사·위증] A의 위증교사에 따라, C·D·E·F·G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「허무인 H가 甲 등의 실사주」라는 취지로 각 위증 ※ 위증 관련 형사재판 2건 중 ▲ 1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(24. 6. 27.), ▲ 나머지 1건은 1심에서 무죄 선고(항소심 중)
A	[특경(횡령)] 2018. 4.~12.경 甲 자금 107억원 임의사용 [자본시장법위반(허위공시)] 2019. 8.·11.경 분기·반기보고서 허위기재
B	[특경(횡령)] 2018. 9.~12.경 바이오 관련 합작법인 자금 8.5억원 임의사용

3

수사 경과

- '19. 12. 20. 금융위 고발
- '21. 1.~'22. 5. 금감원 압수수색, 피의자 등 조사('22. 5. 25. 사건 송치)
- '24. 6. 28. 甲 실사주 A 구속
- '24. 7. 15. 甲 주가조작세력 등 7명 기소

4

수사 결과 및 의의

코스닥 시장의 핫테마 「바이오」를 소재로 삼은 주가조작

- 2018. 초경 코스닥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관련 업종의 주가가 호황을 이루자, A 등은 甲을 무자본 인수한 후 주가 부양에 유리한 '바이오'를 소재 [일명 '펄(pearl)']로 삼아 시세차익 취득(exit)을 도모함
- [사기적 부정거래] 벤처투자사와 결탁하여 해외 유명 펀드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, 바이오 사업으로 유명한 상장사와 유사한 명칭의 페이퍼컴퍼니를 투자자로 공시하는 등 기망수단을 총동원해 주가부양을 시도하여 **합계 194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함**

범행 구조도



- [시세조종] 또한 A는 수개의 팀을 가동해 108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약 6개월간 총 10,541회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160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

합

실체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을 통해, 조직적 사범방해 행위 규명

- A는 2019. 10. 금감원 조사가 개시되자 ‘甲 및 관계사의 실사주는 H이다.’는 내용으로 가상의 인물과 시나리오를 만들어 사건 관계인들에게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할 것을 종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
⇒ 이로 인하여 인적사항도 특정되지 않은 가공인물이 주범으로 지목되는 등 수사가 장기간 난항을 겪게 되었음
- 본건 주범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‘실사주가 누구인지’ 쟁점이 되자, A는 수감되어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도 면회, 서신 교환 등의 방법을 통해 조직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였고 결국 5명의 관련자가 해당 재판에서 위증하였음
※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(1심 무죄) 관련하여, 원심이 파기될 수 있도록 담당 공판검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임
- 검찰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본건 주범 및 가공인물을 추적하여 모든 것이 주범이 만들어낸 시나리오라는 사실을 파악하고, 혐의 입증을 위하여 압수한 휴대전화, 컴퓨터 등 포렌식 자료, 수많은 계좌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, 관련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사안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음

5

향후 계획

-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선량한 일반투자자들의 피같은 돈을 탈취해 가는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몇 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임 